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3. 12 선고 2019가단51001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피고1. 주식회사 B

2. C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0. 3. 12.

주 문

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,605,509원 및 그 중 79,214,861원에 대하여 2019. 4. 14.부터 2019. 12. 3.까지는 연 9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)

판사박희근

별지